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9. 1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9. 9. 16.)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성대

가. 개정이유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구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345명에서 122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23명으로 함(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제3조)

해당년도	계	집행기관	구의회 사무기구	비 고
현행	1,345	1,319	26	
2000년 7월31일까지 적용	1,319 (△26)	1,293 (△26)	26	감축정원 2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0. 12. 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2001년 7월31일까지 적용	1,276 (△43)	1,250 (△43)	26	감축정원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1. 7. 31(별정직 2001. 1. 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최종	1,223 (△53)	1,197 (△53)	26	감축정원 5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 7. 31(별정직 2002. 1. 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감축인원 합계 : 122명) : 현행기준 9.07% 감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함. (부칙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98년도에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한 기구 통폐합에 따라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45명에서 2001년 12월 31일 까지 연차별로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3명으로 개정하고, 부칙 안 제2조 표1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는 26명이 감축된 1,319명으로 적용하고, 표2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43명이 감축된 1,276명을 정원의 총수로 적용하며, 부칙 안 제3조에는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도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동개정조례안에서 정원의 조정방법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정원이 자동 감축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02년 7월 31일 까지는 현정원의 9.07%에 해당하는 122명

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므로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3명이 되겠으나, 부칙 안 제4조에 규정된 직급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 까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 '99. 9. 9일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 30일 까지 정하도록 규정된 바, 부칙 안 제4조의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9. 16. 정형기 위원회 1

나. 수정이유 : 부칙 안 조문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 o "7월 31일"을 "6월 30일"로 수정함. (부칙 안 제4조)

7. 심사결과 : 수 정 (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 정 (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9. 16.

제 안 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칙 안 조문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매년 "7월 31일" 까지를 매년 "6월 30일" 까지로 수정함. (부칙 안 제4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부칙 안 제4조중 "7월 31일" 을 "6월 30일" 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 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u>7월 31일</u> 까지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 ----- 6월 30일 -----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9.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구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관리를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가.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345명에서 122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23명으로 함(안제2조 및 부칙 제2조, 제3조)

해당년도	계	집행기관	구의회 사무기구	비 고
현행	1,345	1,319	26	
2000년 7월31일까지 적용	1,319 (△26)	1,293 (△26)	26	감축정원 2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0.12.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2001년 7월31일까지 적용	1,276 (△43)	1,250 (△43)	26	감축정원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1.7.31(별정적 2001.1.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최종	1,223 (△53)	1,197 (△53)	26	감축정원 5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7.31(별정적 2002.1.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감축인원 합계 : 122명) : 현행기준 9.07% 감축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함.(부칙 제4조)

3. 조례안(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999.8.31 법률 제6002호)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8.8.31 대통령령 제15,875호) 제21조등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3명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97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2001년 7월 31일 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표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7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명(집행기관의 정원 2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3명(집행기관의 정원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3명(집행기관의 정원 5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 까지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3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197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총계 : 1,345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2001년 7월 31일 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319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293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표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1,276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1,250명</td> </tr> <tr> <td>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26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7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27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 되는 정원 26명(집행기관의 정원 2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3명(집행기관의 정원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 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3명(집행 기관의 정원 5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 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 까지 정한다.								